

신청설비 세부기준 공지(1차)

□ 목 적

- 공정개선 분야 고위험 사업장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신청설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

□ 세부기준

<건조기(표면처리용)>

- 도장, 도금 등 표면처리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건조기(표면처리용) 신청 시 지원 가능

☞ 표면처리 공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신청 시 <기타>로 선택 후 신청

<CNC 선반·CNC 밀링(MCT포함)>

- 수치제어를 통한 완전자동 기능을 갖추고, 끼임, 칩 비산 방지를 위해 밀폐조치가 되어있는 CNC선반, CNC밀링(MCT) 신청 시 지원 가능

☞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선반, 밀링은 <기타>로 선택 후 신청

<산업용로봇(도장, 용접)>

- 도장, 용접공정의 자동화를 위해 도장 툴(Tool), 용접토치, 스폿용접기 등을 장착한 산업용로봇 신청 시 지원 가능

☞ 제품의 취출, 이송을 위한 설비는 <산업용로봇(취출, 이송)>으로 선택 후 신청

<긴급 세척설비>

-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세척시설과 세안시설 신청 시 지원 가능

☞ 생산품 또는 기계·기구 등을 세척하는 설비는 <기타>로 선택 후 신청

<원료공급기>

- 지원 대상 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이 있고, 원재료를 해당 공정에 공급하도록 제작된 전용의 설비 신청 시 지원 가능

☞ 크레인 등 중량물 이송장치의 달기구는 지원 불가

□ 적용사항

- '23년도 사업에 신청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, 신청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따라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